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884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2200411)	2024. 6.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9.24.) 상정,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2200412)	2024. 6.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9.24.) 상정,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202561)	2024. 8. 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4.9.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9.24.) 상정,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2207439)	2025. 1.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2208107)	2025. 2.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2208218)	2025. 2.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2208357)	2025. 2.2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2208794)	2025. 3.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2209033)	2025. 3.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2210065)	2025. 4.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7.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7.7.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2211399)	2025. 7. 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2211851)	2025. 7.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2213473)	2025.10. 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2214226)	2025.11.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20.)는 위 1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

	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